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. 7. 20 선고 2017가단67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7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포항시 북구 C 전 149㎡ 지상 단층 무허가건물(컨테이너) 20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2016. 12. 24.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(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)

판사김동휘

별지